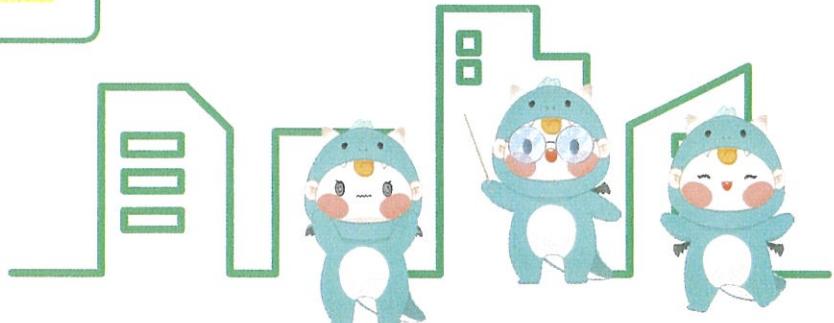




CONTENTS

1.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창출장려금
3. 고용안정장려금
4. 고령자고용지원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및 고용유지*를 해야 함

* 고용조정 제한기간(1개월) 이상 유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2년 범위내 신규 지원제한 예정, '24.7.1.이후)

이 경우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후 90일이 경과해야 함
* 단, 일용근로자, 해고예고·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
근로자

유급
휴업
유급
휴직

지원대상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

* 유급휴업: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 유급휴직: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

【 일반업종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6.6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

* 무급휴업: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대상 30일 이상 실시해야하며,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기준 미만 휴업수당 지급(무급 내지 낮은 수당)

* 무급휴직: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대상 30일 이상 실시해야하며, 사전 근로자대표 합의* 및 시작 전 1년 이내에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요건 필요
* 휴직수당 미지급 등 무급휴직계획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수준은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 지급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지원기간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 총 180일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무급
휴업

무급
휴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고용
창출
장려
금

지원금액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 다만,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

-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3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p>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p> <p>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p>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p> <p>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p>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p>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p> <p>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p>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지원기간 근로시간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p> <p>지원금액 ①(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②(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업주가 월 20만원 * 지원인원 한도: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p>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p> <p>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정액) * 지원인원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p>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종업 시작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고용안정장려금

구분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대상 시설 >

종 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 방식
유연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태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360만원 (1년간)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유 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상향 지원(+10만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 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재택 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 원격 시차 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
(3년치 지원)



고령자고용지원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1년 이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 중견 사회적기업 사업주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하는 기업 지원 제외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지원내용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별*로 계속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

* 해당 사업장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 지원 제외

지원기간 최대 3년, 분기 단위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선지원대상 중견 사회적기업 사업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① 고용보험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과거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분기별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분기 단위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 사업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②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③ 고용보험 가입
- ④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기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지역은 100%

